

# 2022학년도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관 모집 [별첨 1-2]

2022. 5.

## 부천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샘플)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부천대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교육과정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습기관**, 참여하는 **학생**, 운영 주체인 **학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1조(교육과정) 20_	학년도	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2조(운영사항)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1. 실습기관명 : \_\_\_\_\_
-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내용 및 지도 계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학교에 기 제출한 교육부 고 시 별지 제1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 3. 실습기간은 <u>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u>로 한다. 다만, 학생별 실제 실습기간은 실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 4. 실습시간 및 요일
- 가. 실습시간 : 1일 시간 / : ~ : (휴게시간 : 1시간 포함)
- 나. 실습일수 및 요일 : 주\_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 다. 교육과정 상 사전협의 및 동의 되지 않은 야간(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실시될 수 없다.
- 라.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부 고시 따라 본 협약서 외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 5. 휴게 및 휴일
- 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입원일 등의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
- 나. 실습기관에서는 위 휴일 외 실습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 6. 실습지원비 등
-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u>월/주</u>] 기준 \_\_\_\_\_원(세전)을 [<u>당월/익월</u>] \_일 경에 학생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 나. 실습기관에서 연장·야간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야간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 외 해당 실습기관의 편의 · 복지 제도의 활용을 지원한다.
- 라. 학교는 [<u>월/주/일</u>] 기준 \_\_\_\_\_원을 <u>지급시기/대상/방식 등 기재</u> 지급한다.(지급사항이 없을 경우 라. 삭제)
- 7. 실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 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 8.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학교에서는 상해

보험에 가입하여 학생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해당 보험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9. 실습기관에서는 본 협약서 외 학생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u>체결하며 / 체결하지 않으며</u>],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u>가입한다 / 가입하지 않는다</u>].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및 지도계획은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해지 및 중단 등)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중 부득이하거나, 합당한 협약 해지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 또는 학생은 학교와 협의한 후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상호 동의 및 합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어 학생의 해당 학기 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실습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기 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호협력 등)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호 및 성희롱예방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습기관 및 학생,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상호 권리 및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제5조(방문 지도·점검) 학교에서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관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사항의 적합성을 방문·서면 등으로 점검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 시 적극 협조한다.

제6조(출석·평가) 실습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의 출석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 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을 학교에 제출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은 각 조항에 따른 사항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서명 날인 후 상호 협의한 방법으로 1부씩 보관한다.

20\_년 \_월 \_일

[학 교]	[실습기관]	
부천대학교	실습기관명 기입	대학명
총 장 한 정 석 (인)	대표자또는담당부서장 (인)	0000
		(학생이

[화 생] 대학명 기입 0000학과 000(인) (학생이 많을 경우 칸 추가하여 작성)



# 산학협력 마일리지 아내

교육부 주관, 대한상공회의소 운영 MILEAGE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 산학협력 마일리지 개요

#### ▶ 산학협력 마일리께 제도란?

현장실습, 산업체 과제수행 등 참여 실적에 따라 '대학'과 '기업'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산학협력관련 지원사업 등에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 🖊 꾸낀 경과

- 2015.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산학협력 선도대학)
- 2016.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시범 확대 운영(전체대학)
- 2021.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발표(사회관계장관회의, '21.10.13.)
- 2022. 산학협력 마일리지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운영

#### ▶ 운영체계



## ↗ 산학협력 마일리께 꾸묘 개편///항

각종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항목 가운데 '산업체의 직접적인 투입(투자 혹은 비용)이 있는 산학협력 활동'을 적립대상으로 선정

기존 현장실습 참여학생 1명당 100마일리지 부여

⇒ 개선 기업체가 지불한 현장실습비용에 대하여 1만원당 1마일리지 부여

\*\*2022.03. 제도개편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모두 소멸됩니다.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 ▶ 꺽립분야 확대 및 방끽 개선(22.3 /1)행)

분야 확대 대학생 현장실습으로 국한되어있던 **마일리지 적립대상**을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수 분야로 확대** 

- 기업의 비용투입을 객관적으로 확인·증빙할 수 있는 산학협력 활동에 대해 마일리지 부여

방식 개선 하나의 산학협력 활동에 대해 대학과 기업 모두 같은 규모의 마일리지를 함께 적립

## ▶ 산학협력 마일리게 꺽립 방법



## ▶ 간학협력 활동별 마일리게 꺽립기꾼

분야	분야별 활동	적립기준
인력 양성	대학생 현장실습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b>실습지원비 1만원당 1마일리지</b>
	산학협력 교육과정	기업부담 경비*(등록금 지원 등) <b>1만원당 1마일리지</b> *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과정, 캡스톤디자인 운영 관련 경비 등
	학생 채용	산학협력 교육과정* 이수학생 채용 1명당 300마일리지 * 대학생 현장실습,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과정, 캡스톤 디자인 등
연구 개발	산업체 과제수행	(산업체입금액* / 10,000만원 ) <sup>0.6</sup> x 1,000마일리지 * 산학공동연구·위탁연구 시 대학(산단)에 납부한 연구비
기술 이전	기술 이전	(산업체입금액* / 5,000만원 ) <sup>0.7</sup> x 1,000마일리지 * 대학(산단)명의 기술이전계약 체결에 따른 기술이전료
인프라 등	공용장비 활용	(산업체입금액* / 5,000만원 ) <sup>0.7</sup> x 1,000마일리지 * 대학(산단)보유 공용장비 활용 후 입급한 사용료
	산학협력 장학금 등	(산업체입금액* / 1,000만원 ) <sup>0.56</sup> x 1,000마일리지 * 기업이 학생·대학에 기부한 장학금·발전기금 등

#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용**

마일리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학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마일리지 활용사업 확인서"를 제출하여 선정평가에 가점 부여(홈페이지 사업신청)

## ▶ 마일리게 활용 쟄차

## 마일리지 조회 (기업, 대학)

기업이 사업자번호 로 로그인하여 마일 리지 보유현황 조회

## 마일리지 인출 신청서제출

홈페이지에서 활용 사업을 확인 후 해당사업 신청 (마일리지 차감)

## 마일리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제출 후 확인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

## 마일리지 차감 및 재적립

선정 기업 마일리지 차감유지 미선정 기업 마일리지 재적립

## ▶ 기업 마일귀제 확용영역

기업지원사업 우대 기업 R&D지원사업 등 관계부처·지자체의 16개 사업에 기업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가점 등 우대

※ 세부혜택은 '산학협력 마일리지' 홈페이지(http://www.muic.or.kr) 참조

K-ESG 가이드라인 연계 'K-ESG 가이드라인 항목에 '산학협력 활성화 기여' 포함

마일리지 적립 상위 300개 기업 대상으로 시중은행 금리 우대 등 지원 예정('23.~) 금융혜택 등

## ▶ 대학 마일리께 활용영역

대학지원사업 연계 대학 마일리지를 산학협력 관련 8개 대학지원사업('22.기준)의 평가요소, 가점 등 으로 활용

〈 대학 마일리지 연계사업 목록('22.기준) 〉

부처	사업명
교육부	3단계 LINC(LINC 3.0)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BRIDGE+) / 학교 기업 지원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지원 /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고용부	IPP형 일학습병행

※ 일정(안): ('22.) 실태조사 항목 개편 → ('23.~) 대학별 마일리지 현황 조사

마일리지 현황 조사 대학별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활용 현황을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항목으로 포함 추진

<sup>\*</sup>산학협력활동 후 대학이 적립 신청하면 기업계정이 자동 생성됨, 최초 로그인시 아이디/비밀번호는 동일하게 기업의 사업자번호(숫자만) 입력

## 마일리지 거래 플랫폼 운영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시설, 장비 등)을 기업에게 유상 제공시, 마일리지를 활용해 할인받고 사용한 마일리지가 대학에 이전되는 양방향 거래체계 구축(홈페이지 '마일리지 거래소' 메뉴 활용) ※ 중기부 연구장비 사용지원 바우처와 중복사용 제한

#### 기내 플램폼 운영방안



<sup>\*</sup>마일리지를 차감 사용하여(1 마일리지 당 1,000원 상당) 사용료의 최대 30% 할인

# 만학협력 우수기업 인증·끼원

인증 신청기준 3개 이상의 산학협력활동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인증심사 공고일 기준 누적 마일리지가 상위 20% 이내

\* (예) '대학생 현장실습', '학생채용', '공용장비 활용', 3개 활동에서 마일리지 적립

인증 기간 2년간 인증 유지

인증 혜택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마일리지 차감 없이 가점부여, 표창 등 혜택 제공('23.~)

#### 〈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센티브 〉

부처	구분	주요 내용
중기부	① 정책자금	중소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정책지원이 필요한 성장유망 중소기업 대상 장기·저리로 공급
	② R&D보증 관련	R&D보증지원을 위한 기술평가 시 세부평가등급 상향 등 우대
고용부	③ 고용장려금	중소기업이 고용장려금 제도* 신청 시 가점 부여 *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④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신청 시 우대 * 선정될 경우 정기 근로감독 유예 등 지원
	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 50인미만 기업 대상 안전시설 구축비용 지원
	⑥ 일학습병행 지원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선정될 경우 신규입사자 훈련비용 등 지원

